

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안 호	2003-2
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: 2003. 1.

제 출 자: 김제시장

개정이유

-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연간 장학금과 대학교 학생에게 수여하는 장학금이 동일한 금액(100만원)으로 지급됨에 따라 대학교 수업료의 현실을 감안 현행 대학생의 장학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하여 고등학교 학생과 차등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주요골자

- 일반장학생중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15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결과보고서
-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(2002.11.20)
- 김제시 장학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
-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장학금액) 중·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액 수준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<u>100만원</u> 한도로 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7조(장학금액)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</p>